EU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생성형 AI의 학습 및 언론 기사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판단기준 제시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2026년 11월 3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스푸나르(Maciej Szpunar) 법무관은 헝가리 언론출판사 Like Company와 Google Ireland 사이의 분쟁(C-250/25)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법무관은 LLM 학습에 관한 두 가지 선결질문은 본안과의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학습 중 복제와 TDM 예외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본안과 직접 관련된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챗봇의 실시간 언론기사 이용에 관해서는 접근의 적법성, 출력물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인식가능성, 관련 답변에서의 체계적인 재현 및 제공자의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복제권·공중이용제공권 침해와 행위귀속을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무관의 견해[1]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2]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Like Company는 헝가리의 벌러톤호 지역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고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다. 이 회사는 Google의 Bard 및 Gemini 챗봇이 자사의 언론출판물을 허락 없이 LLM의 학습자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수집·활용하고, 그 결과 기사의 내용이 복제 또는 공중이용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7월 게재한 벌러톤호의 돌고래 도입 계획에 관한 기사를 챗봇이 요약한 사례가 분쟁의 구체적 예시로 제시되었다.[3]

Gemini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기반으로 자연어 답변을 생성한다. 그러나 특정 질문에 대응할 때 사전에 학습한 통계적 관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또는 grounding)을 통하여 웹의 외부 자료를 실시간 검색·수집한 뒤 해당 내용을

1) 하지만 사법재판소 판결은 법무관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관의 의견은 사법재판소 판결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2) Opinion of Advocate General Maciej Szpunar, 3 November 2026, Case C-250/25, Like Company v Google Ireland Limited, ECLI:EU:C:2026:919, paras. 1-3, 42-59, 229-240;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55/26, 3 November 2026 (이하 'AG Szpunar, Like Company'로 인용).

3)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1-21.

입력자료에 더하여 답변을 생성할 수도 있다. 법무관은 이 사건에서 보인 기사 요약이 LLM이 해당 기사를 학습과정에서 기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RAG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접근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4)]

관련 권리의 중심에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Directive (EU) 2019/790, 이하 'DSM 지침') 제15조 제1항에 따른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있다. 이 조항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하여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하이퍼링크, 개별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문의 이용에는 해당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기사에 포함된 사실과 보호되는 언론출판물의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행위가 누구에 의해 어떤 서비스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도 구별해야 한다.[5)]

2) 선결질문과 법무관 검토의 구조

헝가리 법원은 네 가지 선결질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챗봇 답변에서 언론출판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공중전달(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질문은 LLM 학습이 복제행위를 수반하는지, 세 번째 질문은 그러한 복제에 DSM 지침 제4조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예외가 적용되는지, 네 번째 질문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챗봇 답변을 제공자에 의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무관은 제1질문 및 제4질문 그리고 제2질문 및 제3질문을 구별하여 심사하였다.[6)]

법무관은 제청서에 기술적 사실관계와 원고의 권리자 지위에 관한 불명확성이 존재하지만, 선결 요청 전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학습에 관한 제2질문과 제3질문에는 별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 질문들의 전제가 되는 Like Company 기사들의 실제 학습 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에서 주장되는 DSM 지침 제15조의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7)]

이러한 절차적 구별은 의견서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학습 중 복제와 TDM 예외에 관한 분석은 법무관이 논쟁의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며, 사법재판소가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 대상은 실시간 RAG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이용이다. 이하에서는 두 논증의 지위를 구별하면서 각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8)]

---

4)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1–13, 47–50, 153–157.
5)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9, 22–25, 51–55, 197–202; Art. 15(1) of Directive (EU) 2019/790.
6)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0–21, 36–45, 159–160.
7)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6–35, 45–59.
8)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42–59, 153–174, 240.

3) 법무관 의견의 주요 내용

(1) 학습에 관한 질문의 부적법성과 역외 학습에 대한 EU법 적용

법무관에 따르면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보호하는 '온라인 이용'은 개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이용을 뜻한다. 반면 모델의 학습은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습만으로 DSM 지침 제15조의 온라인 이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료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일반적인 복제권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9)]

법무관은 학습이 EU 외부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준거법 문제도 검토하였다. 법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에 관한 로마 II 규정[10)] 제8조 제1항의 보호국법주의와 개별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의 영토적 적용범위를 구별한다. Google은 주요 학습 인프라가 있는 국가의 법을, 일부 회원국 정부는 EU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독일 정부는 EU 소재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수집을 연결점으로 고려하였다. 법무관은 이 문제에 단일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11)]

따라서 이 의견을 '해외에서 이루어진 LLM 학습에는 EU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무관이 제청된 질문의 부적법성을 판단한 이유와 역외 학습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검토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12)]

(2) LLM 학습 중 복제와 모델 내부의 복제 문제

정보사회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제2조의 복제권은 직접·간접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와 디지털 복제를 넓게 인정한다. 법무관은 학습용 텍스트의 수집, 데이터세트의 저장, 전처리 및 모델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학습용 텍스트를 토큰(token)에 대응하는 숫자 식별자의 연속으로 변환하거나 학습 반복과정에서 이를 컴퓨터의 주기억장치(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관에 따르면 EU 입법자는 복제의 목적이나 기능보다 기술적인 복제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포괄적인 복제 개념을 채택하였으므로, 통계적 관계를 추출한다는 학습의 목적이 이러한 복제행위의 성립을 배제하지는 않는다.[13)]

그러나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파라미터가 곧 학습저작물의 복제물인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

9)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51–59.

10)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11)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60–73.

12)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46–59, 60–73.

13)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74–83, 특히 paras. 76–81.

법무관에 따르면 LLM은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들을 그대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모델의 파라미터에는 학습데이터 세트 전체에서 추출된 단어와 토큰 사이의 통계적 관계 및 추상적인 언어적 패턴이 반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정보 자체를 특정 저작물의 복제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14)]

다만 LLM이 특정 프롬프트에 따라 학습저작물의 일부를 원문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출력하는 현상인 '기억(memorisation)' 또는 '재현(regurgitat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 내부의 복제 여부가 문제된다. 일부 학설과 독일 법원은 이러한 재현가능성을 근거로 해당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 파라미터에 복제되어 있다고 추론한다. 모델 내부의 정보는 직접 읽을 수 없지만, PDF 파일을 판독 프로그램으로 열어 그 내용을 지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프롬프트를 통하여 원래 저작물을 재현할 수 있다면 이를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디지털 복제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관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LLM은 원칙적으로 학습자료를 암송하기 위한 저장소가 아니라 언어의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며, 기억현상은 특정 텍스트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과적합(overfitting)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15)]

법무관은 모델 내부의 복제와 출력물 자체의 복제도 구별한다. LLM이 학습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생성한 경우, 그 출력물 자체는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저작물의 복제물이 이미 모델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모델의 출력은 파라미터에 저장된 통계적 관계뿐 아니라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의 구체성, 원문 발췌 부분의 길이 및 반복적인 입력 등에 영향을 받으며,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관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특정 저작물의 복제물이 아니라 그러한 복제물을 생성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준비자료(preparatory material)'에 가깝다고 평가한다.[16)]

이러한 견해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LG München I)의 GEMA 관련 판결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 법원은 2025년 11월 11일 GEMA v OpenAI 판결(42 O 14139/24)에서 GPT가 특정 노래의 가사를 프롬프트에 따라 거의 원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모델 내부에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26년 7월 31일 GEMA v Suno 판결(42 O 763/25)에서도 생성된 음악에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음악적 표현이 재현되는 점 등을 근거로 모델 내부의 복제를 인정하였다. 두 판결은 모델의 파라미터에 분산된 정보라도 기술적 처리에 의하여 저작물의 표현을 재현할 수 있다면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법무관은 출력물의 재현가능성으로부터 모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복제물을 추론하는 데

14)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84–85.

15)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86–88, fns. 79–82.

16)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89–92, 특히 paras. 90–91.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17] 따라서 양자의 차이는 AI 학습에 복제권이 적용되는지 자체보다, 출력물의 재현가능성이 모델 내부의 복제물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Szpunar 법무관과 뮌헨 제1지방법원은 학습과정에서의 복제 및 출력물 자체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지만, 출력물의 재현가능성으로부터 모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복제물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 쟁점	Szpunar 법무관	뮌헨 제1지방법원
학습과정의 복제	데이터 수집·전처리·학습 중 기술적 복제는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적용대상	학습과정에서 복제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
모델의 기술적 성격	모델은 저작물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추상적 통계관계로 구성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더라도 파라미터에 저작물의 표현이 분산되어 고정될 수 있음
출력물의 재현가능성	원문 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델 내부 복제를 단정할 수 없음	원문의 상당 부분이 재현된다는 사실은 모델 내부 복제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프롬프트의 역할	출력은 모델 파라미터와 이용자 프롬프트의 결합에 의하여 생성됨	구체적인 원문 재현을 지시하지 않은 프롬프트에서도 보호되는 표현이 나타나면 내부 복제의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음
모델 내부의 복제 여부	모델 파라미터를 복제물보다 복제 가능성을 제공하는 '준비자료'로 보는 신중한 입장	해당 사건에서 모델 내부에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존재한다고 판단
출력물 자체의 복제	원문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표현이 출력되면 복제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	원문의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한 출력물도 복제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모델 내부의 복제 여부는 복제권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모델 개발과 이용에 대한 권리자의 통제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무관은 기억현상이 학습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완전히 방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델 자체를 곧바로 복제물로 평가하면 그 설계와 실제 이용방식에 관계없이 모델 전체가 권리자의 배타적 권한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18] 다만 이러한 논의는 본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학습 관련 선결질문에 대한 부가적인 검토이므로, 법무관의 견해를 AI 모델 내부의 복제 문제에 관한 사법재판소의 확정적인 법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3) TDM 예외, 3단계 심사 및 권리유보

법무관은 학습단계의 복제가 성립할 수 있더라도 DSM 지침 제4조의 일반적인 TDM 예외가 원칙적으로 상업적 LLM 학습에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법무관은 학습에 관한 쟁점에서는 잠정적

17) LG München I, Urteil vom 11.11.2025 – 42 O 14139/24, Rn. 165–190; LG München I, Urteil vom 31.07.2026 – 42 O 763/25, Rn. 262–279; AG Szpunar, Like Company, para. 86, fn. 80, paras. 87–92.

18)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45, 58–59, 90–92.

견해만을 제시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이 결론도 '그렇게 보는 편이다(I tend to think)'라는 유보적 표현으로 제시하였다(Rn. 3, 58, 99). DSM 지침 제2조 제2호는 TDM을 디지털 형태의 텍스트·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패턴·추세·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규정한다. 법무관은 학습과정에서 언어의 통계적 관계를 추출하는 작업 역시 이러한 문언에 포함될 수 있고, 추출한 정보를 나중에 새로운 문장의 생성에 활용한다는 사정만으로 TDM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19)]

그러나 TDM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은 무조건적인 학습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DSM 지침 제4조 제1항은 보호대상에 대한 적법한 접근을 전제로 하고, 제3항은 권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예외의 적용을 제한한다. DSM 지침 제4조 제2항은 TDM 목적으로 생성된 복제물을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관은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1항만으로 장기간 저장되는 학습데이터세트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제4조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였다.[20)]

법무관은 TDM 예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3단계 심사를 별도로 적용하였다. 이 심사에서는 ① 제한규정이 '특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지,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이 세 기준은 일반적인 AI 학습이 초래하는 경쟁효과와 특정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이용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구별하는 토대가 된다.[21)]

첫째, '특정한 특별한 경우'라는 기준에서 법무관은 LLM 학습이 매우 많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만으로 TDM 예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외가 허용하는 행위와 그 목적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DSM 지침 제4조는 자동화된 분석에 필요한 복제·추출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사정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22)]

둘째, '통상적인 이용과의 충돌'을 판단할 때에는 학습자료에 관한 '입력시장'과 AI 생성물이 기존 콘텐츠와 경쟁하는 '출력시장'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력시장에서 학습자료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라이선스 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허락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규정을 배제한다면 예외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법무관은 적법한 접근과 명시적 권리유보라는 DSM 지침 제4조의 요건이 권리자의 이용허락 기회를 일정 부분 보호한다고 설명하였다.[23)]

출력시장에서는 AI가 일반적인 언어패턴이나 문체를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여 기존 저작물과 경쟁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저작권은 사실이나 추상적인 스타일, 일반적인 시장경쟁을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학습저작물에 포함된 보호되는

19)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93-109.
20)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93-102, 140-149.
21)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10-116.
22)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10-116.
23)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17-125.

표현이 출력물에서 인식가능하게 재현되어 원래 저작물을 직접 대체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관은 이러한 위험을 일반적인 경쟁효과와 구별하였다.[24)]

법무관은 특정 학습저작물의 표현이 모델의 답변에서 쉽게 재현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습데이터의 다양화·중복 제거 및 프롬프트·출력 필터 등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예방조치에 주목하였다. 그는 개별 사건에서 그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TDM 예외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이 예방조치의 기준은 DSM 지침 제4조에 독립적인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관이 3단계 심사의 개별적 적용에서 도출한 해석이며, 사법재판소가 이미 확정한 일반 원칙과는 구별해야 한다.[25)]

셋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무관은 창작자의 통제권과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문화·언론 콘텐츠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동시에 AI 개발이 기술혁신,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공익도 인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익을 조정할 때 EU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적법한 접근과 권리유보를 포함한 TDM 예외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특정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용이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검토할 문제로 남겼다.[26)]

TDM 예외의 개별적 적용에서는 적법한 접근과 명시적 권리유보가 계속 중요한 요건이다. 법무관은 웹사이트의 robots.txt, Google-Extended, 파일 메타데이터 및 이용약관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면서, 권리유보의 식별가능성과 권리자의 실제 선택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어 이용약관에 표시된 유보도 자동화된 수집프로그램이 당시 기술수준에서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있다면 적절한 방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크롤링을 기술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27)]

아울러 법무관은 AI Act 제53조 제1항 (c)호의 저작권 준수정책 의무와 (d)호의 학습콘텐츠 요약 공개의무가 권리유보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학습자료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정보비대칭을 고려하면, 이러한 투명성 의무는 권리행사에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AI Act의 준수·투명성 의무와 DSM 지침 제4조에 따른 개별 복제행위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법적 판단대상이다.[28)]

보상제도도 3단계 심사의 세 번째 단계와 연결하여 논의되었다. 법무관은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물의 수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장래에 AI 모델 또는 시스템 제공자에게 일종의 법정 보수·보상체계를 부과할

24)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25–131.
25)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32–133, 152.
26)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34–140, 152.
27)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40–149, 223–228.
28)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45–150; Art. 53(1)(c)–(d) of Regulation (EU) 2024/1689.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현재 EU 차원에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DSM 지침 전문 제17항은 TDM 예외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무관은 그 설명이 제3조의 과학적 연구 목적 TDM 예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제4조의 일반적인 TDM 예외에 해당하는 LLM 학습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법무관의 지침 해석 및 향후 제도설계에 관한 견해이지, 현행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즉시 행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29)]

(4) RAG 과정의 기술적 복제와 일시적 복제 예외

법무관은 RAG를 학습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용단계로 파악하였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은 검색색인과 웹 접근을 통하여 외부 기사를 찾아 일부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LLM의 입력자료로 삼아 답변을 생성한다. 이 과정은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이므로 DSM 지침 제15조의 온라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학습의 경우와 달리 EU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RAG에 관해서는 역외 서버의 소재만으로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30)]

RAG의 수집·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복제는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의 복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복제가 곧바로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라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관은 RAG의 실시간 정보수집은 일반적인 TDM과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DSM 지침 제4조의 학습 목적 TDM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31)]

일시적 복제 예외의 적용에서는 복제가 기술적 과정의 불가분하고 본질적인 부분인지, 잠정적·부수적 성격인지, 독립적인 경제적 의미가 없는지뿐 아니라 '적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무관은 최종 답변이 권리침해에 해당하거나 챗봇이 효과적인 접근·스크래핑 제한조치를 우회한 경우에는 적법한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반대로 적법하게 접근한 기사에서 사실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처리에 수반되는 기술적 복제에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32)]

이 해석은 RAG 내부복제의 허용 여부가 최종 출력물의 성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동시에 단순히 복제물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잠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적 복제 예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33)]

---

29)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51–152 and original fn. 162; recital 17 of Directive (EU) 2019/790.
30)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53–174.
31)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75–181.
32)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79–190.
33)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83–190.

(5) 챗봇 출력물의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 침해

챗봇이 원래 기사와 동일한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은 사건·사실 자체에 대한 독점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관은 기존 사법재판소의 복제권 판례를 참조하면서, 원래 언론출판물이 이용되었고 그 보호되는 표현형식이 출력물에 인식가능하게 남아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복사뿐 아니라 의역이나 재구성도 문제될 수 있지만, 사실정보만을 새로운 구조와 문장으로 전달하는 답변은 구별된다.[34)]

특히 법무관은 답변이 원문의 독특한 배열·구성 및 전반적인 표현을 반영하는 정도가 크고, 이용자가 답변을 읽는 것으로 원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라면 원래 기사의 직접적인 대체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여러 출처에서 수집한 사실을 새로운 순서와 형태로 정리하거나, 간단한 사실관계만을 요약하는 경우에는 원문의 보호되는 표현이 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방문이 감소한다는 경제적 효과만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까지 독점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35)]

공중이용제공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법무관은 챗봇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받는지, 특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원문의 표현형식이 체계적으로 재현되는지를 중시하였다. LLM의 답변은 질문의 구체적 내용이나 대화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단 한 번의 답변만으로 체계적인 제공을 증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권리자는 충분한 수의 출력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36)]

한편 종전 웹사이트의 게시행위와 챗봇을 통한 콘텐츠 제공행위 사이에는 '특정한 기술적 수단' 또는 '새로운 공중'에 관한 판례법도 문제된다. 법무관은 RAG를 통한 생성형 답변 제공을 기존 웹브라우저를 통한 기사 제공과 다른 기술적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에 관한 기존 링크·프레이밍 판례를 생성형 AI에 적용하는 해석이므로, 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서 수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7)]

이를 Like Company가 제시한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판단대상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문제된 기사는 2023년 7월 21일 헝가리 가수 Kozsó가 벌러톤호에 돌고래를 들이려는 계획 등을 보도한 기사였다. 법무관은 기사와 Gemini 답변을 비교하여 두 텍스트에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일부 사실이 있으나, 요약의 표현방식은 상당히 다르고 원문의 첫 문장 정도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는 Gemini의 요약이 다소 대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요약에는 원래 기사가 다룬 여러 사안이 빠져 있었고, 돌고래를 위한 수영장의

34)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91–206.
35)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05–209.
36)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10–214.
37)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10–216.

사용·규모나 대중의 반응처럼 원문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진술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사실정보의 일부 일치, 원문의 표현형식 재현, 요약의 사실적 정확성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표현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 침해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38)]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의 장소·일시·관련 인물과 발생 경과만을 짧고 다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챗봇 답변은 원래 기사와 상당수의 사실을 공유하더라도 그 기사만의 표현구조를 재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독자적인 분석과 인터뷰, 사실의 배열 및 논증구조를 갖춘 심층기사를 챗봇이 일부 문장만 바꾸어 동일한 순서와 전개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이용자가 원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을 대체한다면 보호되는 표현의 인식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새로운 사건의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무관이 Rn. 207과 Rn. 208에서 대비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구체적 침해 여부는 원문과 답변을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39)]

특히 '인식가능성'과 '시장대체'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법무관은 언론출판사의 투자를 보호한다는 DSM 지침 제1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표현의 인식가능성을 판단할 때 원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 가능성을 결정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자가 원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사실정보까지 독점할 수는 없다. 또한 개별 답변에서 표현이 재현되었는지와 여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었는지는 다른 판단이다. 이 같은 구별은 아직 법무관이 제안한 해석구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 확정된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40)]

(6) 제공자에 대한 행위귀속과 묵시적 이용허락

이용자가 특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답변 생성을 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결과의 모든 이용행위를 챗봇 제공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법무관은 기존 온라인 플랫폼 판례의 '의도적 개입'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침해적인 이용이 제공자의 사업모델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41)]

여기서 예방조치에는 효과적인 접근제한의 준수, 무단 수집 방지 및 침해적 출력을 줄이기 위한 필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무관은 우발적인 개별 침해만을 이유로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접근을 경계하고,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에 내재한 위험 및 실제 대응조치에 주목하였다.[42)] 다만 이 기준은 민사적 이용행위의

38)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7–19, 50, 203–205, and original fns. 166 and 208 (on inaccuracies and hallucinated details); see also para. 239.

39)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99–202, 206–209.

40)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02, 207–216.

41)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17–222.

42)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21–222, 229, 237.

귀속에 관한 것이며, 형사법상 고의나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Google은 언론출판사가 기사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별도의 크롤링 제한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RAG 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무관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하이퍼링크·프레이밍에 관한 VG Bild-Kunst 판례의 특정한 맥락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AI 이용에 관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충분히 인식하고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한 기술적 차단조치의 부재를 곧바로 이용허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3]

따라서 TDM 예외의 요건인 '명시적 권리유보가 없을 것'과 RAG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을 것'은 서로 다른 법률문제이다. 공개 웹사이트의 접근가능성도, 기술적 제한조치가 없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챗봇의 모든 후속 이용을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44]

4) 법무관의 최종 제안과 본안사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법무관은 제2질문과 제3질문을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질문과 제4질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할 것을 사법재판소에 제안하였다. 첫째, 챗봇이 언론출판물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특히 효과적인 접근·스크래핑 제한조치를 우회한 경우) 또는 최종 답변에서 원문의 보호되는 표현형식이 이용자로 하여금 원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인식가능하게 재현된 경우에는 복제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대안적인 판단경로이다. 둘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러한 표현이 체계적으로 재현되면 공중이용제공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그러한 이용이 사업모델에 내재되어 있거나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제공자에게 해당 행위가 귀속될 수 있다.[45]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구별하면 우선 복제권에 관한 첫 번째 경로는 챗봇이 기사를 불법적으로 접근·수집하는 경우이다. 특히 권리자가 시행한 효과적인 접근 또는 스크래핑 제한조치를 우회하였다면 출력물에서 원문이 그대로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RAG 내부의 복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적법한 접근이 이루어졌더라도 생성된 답변에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호되는 표현형식이 원문을 직접 대체할 정도로 인식가능하게 재현되는 경우이다. 법무관은 이 두 경우를 대안적인 판단사유로 제시하였다.[46]

공중이용제공권의 경우에는 개별 답변의 유사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무관은 관련 사용자 질문들에 대한 챗봇의 답변에서 위와 같은 원문의 표현이 체계적으로 인식가능하게 재현되는 경우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이는

43)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23-228.
44)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43-149, 223-228.
45)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29, 240.
46)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75-190, 229, 240.

특정한 유도 프롬프트로 한 차례 유사한 답변이 생성되었다는 사실과 서비스가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출판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을 구별하려는 기준이다. 원고가 실제 출력물의 내용·빈도·질문의 맥락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는 향후 사건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47)]

마지막으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이용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챗봇 제공자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관의 최종 제안에 따르면 그러한 이용이 제공자의 사업모델에 내재되어 있거나, 그 상황의 합리적으로 주의 깊은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제공자가 마련하지 않았을 때 제공자에게 그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호범위와 이용행위의 성립, 예외의 적용, 제공자에 대한 행위귀속은 별개의 판단단계라는 점을 유지해야 한다.[48)]

이러한 구조는 언론출판사의 지식재산권과 보도 생산의 경제적 토대, AI 기업의 영업의 자유 및 이용자의 정보수령 자유를 조정하려는 시도이다. 법무관은 합법적으로 접근한 정보를 원문 표현이 인식되지 않는 형태로 종합하고 원출처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활동의 여지를 두는 반면, 보호되는 표현을 대체적으로 재현하거나 접근제한을 우회하는 서비스에는 권리자의 통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49)]

Like Company 본안사건에 관하여 법무관은 제청법원의 사실확인을 전제로, Google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잠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네 가지 사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Like Company가 기사에 대한 접근 또는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제출된 Gemini 답변에서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된 보호되는 표현형식이 인식가능하게 재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그러한 복제나 공중이용제공이 Google의 사업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Google이 그러한 침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다만 이는 법무관의 예비적인 평가일 뿐이며, 최종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은 헝가리 제청법원에 맡겨져 있다.[50)]

3. 평가 및 전망

이번 법무관 의견서의 의의는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하나의 행위로 일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습자료의 수집 및 복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 실시간 RAG 처리, 최종 출력물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행위귀속으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특히 LLM 학습과 RAG는 기술적 목적·시점·저작권법상 관련성이 다르므로

47)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10–216, 240.
48)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17–222, 229, 240.
49)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30–238.
50) AG Szpunar, Like Company, para. 239.

TDM 예외의 적용 여부와 일시적 복제의 허용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51]

다만 법무관의 접근에는 향후 검토할 쟁점도 남아 있다. 직접적인 시장대체 가능성을 복제권 침해 판단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 출력의 '체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적절한 기술적 예방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는 기존 사법재판소 판례에서 그대로 확립된 단일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TDM 예외와 모델 내부 복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부적법하다고 본 선결질문에 관한 부가적 분석이라는 절차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이 이 기준을 채택·수정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52]

특히 법무관이 TDM에 대한 3단계 심사를 모델의 출력위험 관리와 연결한 부분은 학습 중 복제의 허용성과 학습 이후 출력물의 침해 가능성을 어느 범위까지 함께 평가할 것인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법무관이 제안한 예방조치 기준을 수용할 경우 모델 개발자에게 학습데이터 구성과 출력위험 관리의 설명·입증이 중요해질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요구되는 조치의 구체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추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DSM 지침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접근 및 권리유보 요건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할 쟁점이다.[53]

이와 관련하여 European Copyright Society는 2026년 5월 발표한 의견에서 사건의 불명확한 기술적 사실관계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갖는 제한된 보호범위에 주의를 촉구하였다. 법무관 의견서 발표 이후 João Pedro Quintais 역시 법무관이 제안한 출력물의 인식가능성 및 직접 대체성 기준과 AI 제공자 책임의 판단방식에 관한 검토 과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법무관의 입장과 구별되는 외부의 학술적 평가로 이해해야 한다.[54]

한편 헝가리 법원은 2026년 7월 Manchester United Fanatics Klub Magyarország 사건(C-806/26)과 Mobilguru 사건(C-829/26)을 추가로 제청하였다. 두 사건은 LLM 학습과정의 복제, 이용자 프롬프트, 출력물의 권리침해, 정보사회서비스의 범위 및 TDM 목적의 명시적 권리유보 방식 등을 문제 삼는다. 이들 제청은 법무관 의견서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그 견해에 대한 사후적 반응은 아니지만, 동일한 쟁점이 계속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55]

따라서 Like Company 사건의 향후 판결은 개별 언론출판사의 권리침해 판단뿐 아니라 생성형 AI가 뉴스

51)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74-109, 153-190, 217-229.

52)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42-59, 191-222, 237-240.

53)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124, 132-133, 140-152.

54) Mezei, P. et al., "Comment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 on the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 in Case C-250/25 (Like Company)", IIC 57 (2026), pp. 850-864; Quintais, J. P., "First Reflections on AG Szpunar's Opinion in Like Company", Kluwer Copyright Blog, 3 November 2026.

55) Court of Justice, Case C-806/26, Manchester United Fanatics Klub Magyarország v Google Ireland,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 lodged 20 July 2026; Case C-829/26, Mobilguru v Google Ireland,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 lodged 28 July 2026; Foerg, M., "Hungary's trio of AI referrals on the press publishers' right", Kluwer Copyright Blog, 11 November 2026.

콘텐츠를 검색·종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입증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AI 요약의 정보원 다양성, 사실왜곡 및 허위정보의 문제까지 저작권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법무관의 지적처럼, 최종적인 법제도적 대응은 저작권법과 별도의 정보·소비자 보호 규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56)]

참고자료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Opinion of Advocate General Maciej Szpunar, 3 November 2026, Case C-250/25, Like Company v Google Ireland Limited, ECLI:EU:C:2026:919.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redirect/juris/documents.jsf?num=C-250%2F25)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55/26, 3 November 2026 (https://curia.europa.eu/site/upload/docs/application/pdf/2026-11/cp260155en.pdf)
- Mezei, P./Kretschmer, M./Margoni, T./Peukert, A./Quintais, J. P., "Comment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 on the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 in Case C-250/25 (Like Company)", IIC 57 (2026), pp. 850-864.(https://doi.org/10.1007/s40319-026-01717-6)
- Quintais, J. P., "First Reflections on AG Szpunar's Opinion in Like Company", Kluwer Copyright Blog, 3 November 2026.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first-reflections-on-ag-szpunars-opinion-in-like-company/)
- Foerg, M., "Hungary's trio of AI referrals on the press publishers' right", Kluwer Copyright Blog, 11 November 2026.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hungarys-trio-of-ai-referrals-on-the-press-publishers-right/)

56) AG Szpunar, Like Company, paras. 230-240.